

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6. 11. 제천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8. 6. 13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8. 6. 19.(제147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건강증진팀장 박혜숙)

가. 제안사유

- 현재 국민건강보건요양급여비용 기준 및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처치는 비보험으로 고가의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.
- 따라서 치과예방치료인 스켈링(치석제거)을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
-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등급 1~6급 장애인에 대하여 스켈링 진료 수가를 감면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치과진료 수가기준

구 분	기 준	수 가	비 고
1. 치석제거(스켈링)	1회	20,000원	

○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

- 장애등급 1-6급 장애인에 대하여 치석제거(스켈링) 진료비 감면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- 지방자치법 제137조(수수료)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.
- 지역보건법 제14조(수수료등) 제1항에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, 동법 제14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.
- 또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9조의 2(수수료 등)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 의거 그 수수료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5월 16일 입법예고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.

【 행정적 검토 】

- 제천시 종합보건복지센터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급격한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 9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8월 구시청사에 준공예정될 예정임.

- 종합보건복지센터내에 설치될 구강보건센터는 기존의 구강보건사업을 병행하면서 그 동안 접근할수 없었던 저 소득층 및 특수계층(장애우, 노인)에 대한 치과 진료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구강예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높은 본인부담 비율과 많은 비급여항목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왔으며 질병예방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제기되어 왔음.
- 본 조례안은 치석제거 사업을 통하여 치주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, 노인, 특히 장애우들에 대한 1차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 심의시 치석제거에 대한 진료수가의 적절성을 타시군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일반 치과병원과의 의견조율이나 민원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의료수가에 대한 설명과 치석제거에 대한 진료수가가 의료수가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치석제거 수수료 감면에 부분에서 장애우에 대해서 1급에서 6급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답변 요지(건강증진팀장 : 박혜숙)

- 치석제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장애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?
(박기석 의원)
: 장애우 전체에 해당되는 것임. 장애우 1~2급만 대상으로 하면 인원이 너무 적어서 장애우 전체에 적용함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